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590호

「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 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수소전기자동차의 내압용기,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의 검사 기준과 관련된 국제기준 개정(GTR13, '23.11. 채택)에 따라 본 고시를 국제조화하여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, 용기밸브 및 용기 안전장치에 대해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 시험방법과 검사기준을 개정하고, 연료전지의 성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차단밸브를 일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, 기타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에 대해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 시험방법과 검사기준을 개정(안 별표4)

나. 압축수소가스 용기밸브 및 용기 안전장치에 대해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 시험방법과 검사기준을 개정(안 별표7)

다. 연료전지의 성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차단밸브를 일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(안 별표11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.12.16.(월)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자동차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령정보>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현행	개정안	의견

나. 보내실 곳

- 1) 일반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
(우편번호 30103)
- 2) 전화/팩스: 044-201-3853 / 044-201-5584
- 3) 이메일: yhkogo@korea.kr